

2005. 11. 18.(금)

제118회 임시회의 제2차본회의

심사보고서

-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자치행정위원회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제천시장

나. 회부일자 : 2005. 11. 10.

다. 상 정 일 자 : 2005. 11. 15.(제11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 제1차회의)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윤종철)

가. 심의사유

- #### ○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결정

나. 주요안전

〈 취득재산 : 6건 〉

- 국민임대단지내 『임대공장』 신축
 - 정부의 우수 한약유통 지원시설 건립
 - 신백두학동사무소 증축
 - 교동사무소 신축
 - 2급관사(부시장관사) 취득(매입)
 - 제천어린이복지센타 신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후준)

-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 및 처분코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동법시행령 34조2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시군구는 1건당 가격이 1백원 이상으로 토지는 1건당 1,000m² 이상의 취득 및 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2006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절차는 적법하다 할 것이며,

- 2006년도 공유재산 관련계획임은 투자통상실의 국민임대단지내 임대공장 신축은 건설한 지방기업육성을 위한 산실을 마련하고자 총 사업비 1,500백만원(특별교부세 1,000, 시비 500)을 투자하여 부지 11,185m², 건축면적 1,983m² 빌라형 창업보육센타로 건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도권 소재 지방이전 기업으로 BT, IT 중심 특화 임대 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추진 계획내에 의하면 2005년부터 진행중인 사업으로 투융자 심사 및 용역과제심의 등 이미 사업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05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 하였어야 할 사항이라 사료되며 사업계획이 보고시마다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제천 바이오밸리내 우수한 한약 유통지원시설을 건립하여 중부권 최대 물류기지를 구축하고자 부지 22,000평, 건평 3,100평정도 시설을 건립코자 총사업비 10,000백만원(국비 5,000, 도비 2,500, 시비 2,500)을 투자하고자 하였으며 토지매입비 전액 시비 6,340백만원을 '06년도에는 1,610백만원의 예산을 편성코자 하는 것으로 '09년까지 4개년에 걸쳐 연부 취득 절차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여 연도 별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 자치행정과의 신백두학동사무소 증축과 교동청사 신축은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코자 하는 것으로 규모와 위치선정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 회계과의 2급관사 구입은 외지에서 부임하는 분들을 위하여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기존의 관사로 사용하던 건물이 2동이나 있으므로 향후 계속해서 관사가 꼭 필요한 것인지 현재 각 시군의 1급 관사

도 거의 사용을 하고 있지 않는 점을 감안으로 2급 관사를 구입코
저 하는데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복지사업과의 어린이 복지센타 신축은 어린이 문화복지시설을 확충
하여 방과후 어린이들이 건전한 놀이 문화지도를 위한 학습 공간을
마련하고자 사업비 1,700백만원(도비 800백만원, 시비 900백만원)을
투자하여 2개소를 건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비가 확보되기까지 업
무보고등에 대한 계획이 없으며 시설이 완공된후 운영방안, 예산등
에 대하여 상세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4. 질의답변 요지

가. 질의요지

- 총괄적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계획대로 진행을 해도 무리
없다고 판단이 됩니까? (유경상 위원)
- 신백두학동청사 증축년도가 몇 년도였죠? (유경상 위원)
- 옛날 제천군 관사는 뭘로 이용을 합니까? (유경상 위원)
-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시기가 좀 늦었죠? 적정시기
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진학 위원)
- 시장관사에 화재난거 다 보수가 됐습니까? (김진학 위원)
- BTL사업에 대한 취지가 어떻습니까? (김진학 위원)

나. 답변요지 (회계과장 윤종철, 생태특화담당 이주식)

- 아직은 확보는 안했습니다.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시면 예산사정에 따라 가지고 단
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축은 1997년도고요 가설건축물 증축은 2003년도에 했습니다.
- 제천군수관사였다가 시군이 통합이 되면서 부시장관사로 사용하
였으며 현재는 육상선수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이미 추진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좀 늦었음. 작년도는 정례회때
같이 올라왔었으나 올해는 정례회전에 상정을 했습니다.

- 화재에 시설물 훼손은 없고 일부 보일러시설만 탔는데 그것을 청소를 하였습니다.
- BTL사업은 정부에서 재정의 어떤 부담을 덜기 위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건물을 신축하고 그리고 신축된 건물은 준공후에는 지자체나 국가기관으로 기부채납 이전을 해서 이전한 후에는 그간 투자한 원리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5. 소수의견

“없음”

6. 토론요지

-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가 승인을 안해 줄 수 없는 사안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만. 업무적 절차상이라던가 향후 의회를 존중하는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금번 계획안을 우리가 승인을 한다. 손치더라도 향후에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내용으로서는 우선적으로 시기적으로 늦었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담당부서에서는 좀더 치밀한 재산계획을 가지고 투자계획을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사전 절차상 모든 행위를 점검하고 운영에 대한 효과적 측면까지 점검한 이후에 본안으로 접수를 해서 의회에 올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가 미흡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심사보고 붙임서류

-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부. 끝.